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9. 7.(목)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이옥희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3년 8월 29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30일

3. 제안 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서 사용한 ‘성평등’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상위법과 혼돈을 초래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한 ‘성평등’의 용어를 올바르게 변경하고, 조례 제명과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조례의 목적을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함”으로 수정함(안 제1조)

- (현행) ‘성평등’ → (개정) ‘양성평등’ 으로 변경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5. 검토 의견

가. 조례 개정 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현행 조례의 ‘성평등’이라는 용어와 개념 정의가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해석, 적용상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한 ‘성평등’의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자치법규를 입안하는데 있어서 조문 체계와 형식 및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 사용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였음.

- 현행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정됨을 제1조 목적 규정에 명시하고 있고, 안 제2조의 “성평등”에 대한 정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의 “양성평등”에 대한 용어 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용어는 각기 다르지만 그 의미는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동일한 뜻에 대하여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명시하였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상이하게 표기하고 있는 것임.

- 이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한 “성평등”이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과 정의 규정이 같고 의미하는 바가 같으므로,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법체계에 위반되지 않으며, 학교 교육현장에서 법 규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혼돈 없이 하고 교육적 활용과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 또한, 본 개정 조례안과 관련된 타 시도교육청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충북을 포함하여 총 6곳의 교육청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충북과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시도 교육청 양성평등(성평등)조례 제정 현황 〉

(2023년 09월 기준)

교육청	조례명	공포일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2020. 7. 8.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2020. 3. 2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0. 7. 10.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	2021. 2. 18.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2020. 12. 11.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2020. 5. 19.

다. 종합의견

-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사용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본 원칙과 법체계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육 현장에서 법 규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법령체계 안에서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조례에서 사용한 ‘성평등’의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려는 본 조례 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 개정 조례안의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현행 조례가 2020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육정책과 세부사업에서 ‘성평등’ 과 ‘양성평등’ 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¹⁾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바르고 일관성 있는 용어 사용과 교육적 적용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2023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p320~323), 2023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p318~321)
(예) 성평등 교육, 성평등 자료보급, 양성평등주간 문화행사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문에 대한 의견 접수 검토 및 조치 결과

- 조례안 예고기간: 2023년 8월 31일. ~ 9. 5.
- 의견접수일: 2023년 9월 5일
- 의견접수: 총1건
- 의견접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출자	현	행	개 정 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조례안 예고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조치결과
김지연 (솔량중 교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성평등	충청북도교육청 <u>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u> 에 관한 조례	○ 개정안 반대	○ 미반영 - 현행 조례가 「양성평등기본 법」에 따라 제정됨을 제1조 목 적 규정에 명시하고 있고, 안 제2 조의 “성평등”에 대한 정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의 “양성평등”에 대한 용어 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용어는 각기 다르지만 그 의미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 등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 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성평등 교육 실현 의지를 삭제한 이번 입법 예고안은 명백한 중복 성 평등 교육의 후퇴입니다.	

	<p>고, <u>성평등 교육을 통한 교육당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통해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것은 일부 단체와 혐오세력들의 논리에 도의회가 결과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도의회 또한, 시대적 및 사회적 요구에 의한 성인지감수성을 키워나 가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살피주시길 바랍니다.</p>	<p>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동일한 뜻에 대하여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명시하였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상이하게 표기하고 있는 것임.</p>
<p>1. <u>“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u></p>	<p>1. <u>“양성평등”이란</u> ----- ----- ----- ----- ----- ----- -----</p>	<p>○ 개정안 반대 ○ 2020년 5월, 교육부는 충북 교육청에 <u>성평등조례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일괄 수정</u>하라는 내용의 <u>제의 요구</u>를 하였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법률의 양성평등과 조례의 성평등의 정의가 동일하고,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라며 <u>제의 요구</u>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p>	<p>- 이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한 “성평등”이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과 정의 규정이 같고 의미하는 바가 같으므로,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법체계에 위반되지 않으며, 학교 교육현장에서 법 규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혼돈 없이 하고 교육적 활용과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개정이</p>	
<p>2. <u>“성평등 교육”이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u></p>	<p>2. <u>양성평등</u> ----- ----- -----</p>			

	<p>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u>성평등</u>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여 성적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며, <u>성평등</u>을 실천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p>	<p>----- ----- ----- <u>양성평등과</u> ----- ----- ----- ----- <u>양성평등</u> ----- ----- ----- -----</p>	<p>명하였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 또한 교육부의 제의 요구 철회를 촉구하였고 성평등조례는 통과되었습니다. 충북도의회에서 다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혐오를 부추겨 분란을 재점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의회가 도민의 권리와 행복을 갈라치기하고 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자치라는 의미에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p>	<p>라 판단됨. - 즉,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사용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본 원칙과 법체계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육현장에서 법규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법령체계 안에서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조례에서 사용한 ‘성평등’의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려는 본 조례 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당하다 판단됨.</p>
<p>3. “<u>성평등 교육환경</u>”이란 교육당사자가 교육을 하거나 받고 있는 주위의 조건 또는 사회적 상황이 <u>성평등</u>한 것을 뜻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p>	<p>3. <u>양성평등</u> ----- ----- ----- ----- ----- <u>양성평등한</u> -----</p>	<p>○ ‘2022년 양성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충북의 양성평등 지수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매일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마저 양성민원으로 도전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p>		

	<p>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그 운영에 있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 ----- <u>양성평등</u> ----- ----- -----</p>		
	<p>③ 교육감은 <u>성평등 관점</u>에 따른 인권 보호 및 <u>성평등 문화 조성</u> 등 <u>성평등 교육·정책</u>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u>성평등 진담</u> 조직을 둘 수 있다.</p>	<p>③ ----- <u>양성평등 관점</u> ----- ----- <u>양성평등 문화</u> ----- ----- <u>양성평등 교육·정책</u> ----- ----- <u>양성평등 진담</u> ----- -----</p>	<p>○ 개정안 반대</p>	
	<p>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충청북도 교육청 <u>성평등 교육환경 조성</u> 및 <u>활성화 기본계획</u>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 ----- ----- <u>양성평등</u> ----- ----- ----- -----</p>	<p>○ 개정안 반대</p>	

	1. <u>성평등</u> 교육환경 조성 기본방향 및 추진 목 표, 추진 방안	1. <u>양성평등</u> ----- ----- ---		○ 개정안 반대
	2. <u>성평등</u>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정책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2. <u>양성평등</u> ----- ----- -----		○ 개정안 반대
	4. <u>성평등</u> 교육환경 조성 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 화 연수 계획	4. <u>양성평등</u> ----- ----- -----		○ 개정안 반대
	5. <u>성평등</u> 관점의 성차별 · 성폭력 방지 및 근절 계획	5. <u>양성평등</u> ----- ----- -----		○ 개정안 반대
	6. <u>성평등</u> 교육자료 및 연구자료 개발·보급	6. <u>양성평등</u> ----- ----- ---		○ 개정안 반대
	7. 지역사회 <u>성평등</u> 교육 환경 조성 협력망의 구	7. ----- <u>양성평등</u> ----- ----- -----		○ 개정안 반대

	<p>제9조(실행조사) 교육감은 <u>성평등 교육 실태와 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u>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9조(실행조사) ----- <u>양성평등 교육</u> ----- <u>양성평등</u> <u>에</u> ----- ----- ----- -----</p>	<p>○ 개정안 반대</p>	
	<p>제10조(성평등 교육 및 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교육당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u>성평등 교육</u>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0조(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조성) ① ----- ----- ----- <u>양성</u> <u>평등</u> ----- -----</p>	<p>○ 개정안 반대</p>	
	<p>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자격연수에서 <u>성평등</u> 교과목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 ----- ----- <u>양성평등</u> ----- -----</p>	<p>○ 개정안 반대</p>	
	<p>③ 교육감은 학교 및 소속기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u>성평등</u> 관련 직무연수 과정이 운영되거나 교과</p>	<p>③ ----- ----- ----- <u>양성평등</u> ----- -----</p>	<p>○ 개정안 반대</p>	

	<p>과 학교 및 소속기관 직원의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 ----- ----- ----- ----- ----- -----</p>		
	<p>2. <u>성평등</u> 및 성폭력 사안처리 관련 업무 담당자의 성인지 교육 강화</p>	<p>2. <u>양성평등</u> ----- ----- ----- -----</p>	<p>○ 개정안 반대</p>	
	<p>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u>성평등</u> 교육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2조(협력체계 구축) ----- <u>양성평등</u> ----- ----- ----- ----- ----- -----</p>	<p>○ 개정안 반대</p>	

